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환경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번호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수질검사 대상 및 의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9조)
- 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수도시설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주교동)
- 전 화 :수도시설과 수질검사팀 (031-8075-4550)
- 팩 스 : 031-962-10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20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라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정수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가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관계 공무원은 현장 측정항목을 측정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질검사 의뢰) 의뢰인은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용 수질검사인 경우에는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을 말한다) 및 소규모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일반상수도, 수질 민원에 관한 수질검사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뢰하는 정수기 수질검사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1조 및 제3조 중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각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장명 성명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팀장명 성명	수질검사팀장 김점빈
	담당자 성명·전화	김현주 (031-8075-45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u>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66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라 칭한다.</u></p> <p>제3조(조직)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장은 <u>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u></p> <p>제4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원수 2. ~ 7. (생략)</p> <p>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 신청인이 해당 지역</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u>먹는물 수질검사기관</u>.....</p> <p>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u>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20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라 한다.</u></p> <p>제3조(조직) <u>먹는물 수질검사기관</u>.....</p> <p>제4조(검사대상) 1. 「수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u>정수</u> 2.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p>

현행	개정안
<p>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봉합하게 한 후 이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p> <p>제6조(수질검사 의뢰)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p> <p>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 검사</p> <p>3.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p> <p>1.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가 아닌 정기 수질검사</p> <p>2. (생략)</p>	<p>“의뢰인”이라 한다)가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관계 공무원은 현장 측정항목을 측정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p> <p>제6조(수질검사 의뢰) 의뢰인은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용 수질검사인 경우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을 말한다) 및 소규모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일반상수도, 수질민원에 관한 수질검사</p> <p>3.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뢰하는 정수기 수질검사</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u>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과오납한 경우</u> <u>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과태료 및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호)
- 나.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이용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 다.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녹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녹지과 자연생태팀 (031-8075-436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다음 각 호의 행위”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태료)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내의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 지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녹지과장 김 평 순
	팀 장 성 명	자연생태팀장 곽 영 숙
	담 당 자 성명 · 전화	박 진 선 (031-8075-4367)

현행	개정안
<p><u>제28조(과태료) 생태교육 및 교육센터 내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u></p>	<p><u>제28조(과태료) 생태교육 및 교육센터 내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먹는물 수질검사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질검사성적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질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검사대상의 검사항목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함.(안 별표)
- 나.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질검사성적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3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수도시설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주교동)
- 전 화 : 수도시설과 수질검사팀(031-8075-4550)
- 팩 스 : 031-962-10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각각 “「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을 “조례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을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제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먹는물란, 지하수란, 수영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돗물(전항목)		60개 항목	15일	4ℓ 이상
지하수	음용수	46개 항목	15일	4ℓ 이상
	생활용수	20개 항목	15일	4ℓ 이상
	공업용수	15개 항목	15일	4ℓ 이상
	농업용수			
수영조	욕수	8개 항목	10일	2ℓ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장 성명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팀장 성명	수질검사팀장 김점빈
	담당자 성명·전화	김현주 (031-8075-45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고양시 먹는물수 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 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 ① 「<u>고양 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6 조에 따른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 식과 같다.</p> <p>② 「<u>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u>」(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수수 료 납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u>고양시 먹는물 수 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2조(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 ① 「<u>고양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u>」.....</p> <p>② <u>조례 제7조제2항</u></p> <p>③ (현행과 같음)</p>

개 정 안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제3조 관련)

[별표]

검사종별	검사항목	처리기간	시료 소요량	
수돗물(전항목)	60개 항목	15일	4ℓ 이상	
	먹는물공동시설	15일	4ℓ 이상	
	샘 물	47개 항목	15일	○ 세균학적 검사 : 2ℓ 이상
		47개 항목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먹는샘물	51개 항목	15일	4ℓ 이상	
	음용수	15일	4ℓ 이상	
	생활용수	15일	4ℓ 이상	
	공업용수 농업용수	15일	4ℓ 이상	
지 하 수	원수	10일	2ℓ 이상	
	유조수	10일	2ℓ 이상	
	욕수	10일	2ℓ 이상	
수영조	저수조	10일	1ℓ 이상	
	욕내 급수관	10일	1ℓ 이상	
목욕장	5개 항목	10일	2ℓ 이상	
수영조	3개 항목	10일	2ℓ 이상	
	8개 항목	10일	2ℓ 이상	
급수 설비	저수조	10일	1ℓ 이상	
	욕내 급수관	10일	1ℓ 이상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별표]

검사종별	검사항목	처리기간	시료 소요량	
먹는물	54개 항목	15일	4ℓ 이상	
	먹는물공동시설	15일	4ℓ 이상	
	샘 물	47개 항목	15일	○ 세균학적 검사 : 2ℓ 이상
		51개 항목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먹는샘물	46개 항목	15일	4ℓ 이상	
	음용수	15일	4ℓ 이상	
	생활용수	15일	4ℓ 이상	
	공업용수 농업용수	15일	4ℓ 이상	
지 하 수	원수	10일	2ℓ 이상	
	유조수	10일	2ℓ 이상	
	욕수	10일	2ℓ 이상	
수영조	저수조	10일	1ℓ 이상	
	욕내 급수관	10일	1ℓ 이상	
목욕장	5개 항목	10일	2ℓ 이상	
수영조	3개 항목	10일	2ℓ 이상	
	5개 항목	10일	2ℓ 이상	
급수 설비	저수조	10일	1ℓ 이상	
	욕내 급수관	10일	1ℓ 이상	
비고 1. ~ 3. (생략)				

